

대한 양계협회

소식

'95검정소 성계사 신축 및 자동화시설 공사 기공식 거행



본회는 지난 10월 6일 닭경제능력검정소에서 최준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95검정소 성계사 신축 및 자동화 시설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9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닭경제능력검정소 자동화 시설은 지난 3월 22일, 1차년도 계획으로 육추사와 성계사 각각 1동씩 준공되었는데 육추사에서 16주간 사육된

후 육성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성계사 1개 동만으로는 매년 검정이 불가능하므로 추가로 성계사 1개동에 대한 설립계획이 추진되어 왔다.

이번 신축될 계사는 건평 120평에 무창 6단 4열직립식 케이지로 12,480수가 사육되어질 예정인데 공사는 (주)유경축산에서 맡았으며 자금은 농림수산부로부터 축산발전기금을 지원 받게 된다.

종계 수입시 초생추의 수입위생조건 철저 이행 시달

본회는 '95종계의 양허관세 추천물량을 '95년 12월말 이내에 통관하여 수입 또는 통관지연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초생추의 수입위생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종계수입대상 농장에 시달하였다.

- 다 음 -

농림수산부고시 제1994-4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초생추의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994년 8월 20일
농림수산부고시

초생추의 수입위생조건

한국으로 수출되는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 등의 초생추(이하 "수출초생추"라 한다.)는 "한국으로 초생추를 수출하려는 국가" (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 초생추는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 수출국은 초생추의 수출전 3년간 가금인플루엔자(Fowl plague)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단, 한국농림수산부 장관이 가금인플루엔자 살처분정책을 실시하

고 있다고 인정하는 수출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로 할 수 있다.

2.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에서 초생추의 수출전 12개월간 뉴캐슬병(VVND)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3.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 가금전염병 발생상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가금인플루엔자, 뉴캐슬병 및 새롭게 확인된 중요가금질병의 발생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한국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 중지로부터 재개시에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초생추의 수출전 최소 12개월간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전염성후두기관염,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오리바이러스성장염,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가금티프스, 마레병,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너척수염, 앵무병, 가금백혈병, 세망내피증, 전염성 F낭병, 전염성 빈혈(CAA), 전염성기관지염, 제두, 가금결핵 및 EDS '76의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 발생이 없어야 한다.

5. 수출초생추를 생산하는 종계군은(암, 수 모두) 초생추 수출전 3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별표의 질병에 대한 표본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표본 검사비율은 종계군의 1%로 하되 최소한 300수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 종계군이 300수 미만일 경우 모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및 한국농림수산부 장관이 수출국내 비발생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6.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수출국 정부의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된 곳으로서 수출국 정부 수의기관의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아야 한다.

7. 수출 초생추는 한국으로 수출선적전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검사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8. 수출 초생추의 수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서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수출 초생추는 수출국 국내 및 한국으로 수송중에 당해 수출초생추이외의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10. 수출국 정부수익관은 다음의 사항을 영문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상기 1, 2, 4 및 6~8항에 명시된 사항

나. 별표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종계수(암, 수), 사료채취일, 검사실기일,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

다. 수출초생추 또는 당해 초생추의 생산 종계군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 접종년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

라.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

마. 수출초생추의 종류(육용, 산란용), 품종 및 수량

바.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

사.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아.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11. 상기 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실시하는 수입검역 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감염이 확인된 경우 당해 초생추 전 lot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199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95 축산업 자조금 사업에 대한 질의회신

본회는 축영 51521-465(95. 8. 24)호와 관련하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교부 결정시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 다 음 —

질 의 요 지	검 토 의 견
<p>• 축산업 자조금에 대한 근거법령이 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5 축산업자조금 사업 보조금교부 결정을 '95. 1. 1부터 적용할 것인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시행되는 '95. 6. 23일부터 적용할 것인가?</p>	<p>• 축산자조금 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근거를 하는 사업이므로 동사업의 보조금 집행은 동법시행령중 개정령이 시행되는 '95. 6. 23일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임</p>

'95 제 4 차 검정위원회 개최
제44회 육용계검정 최종성적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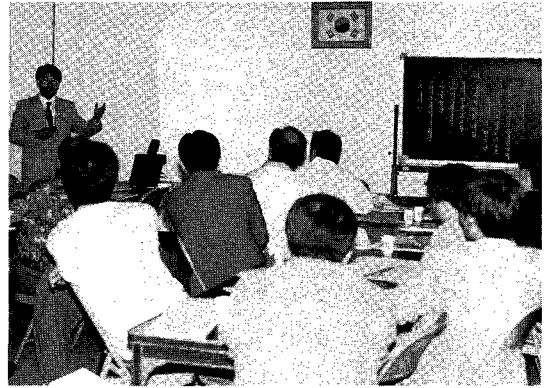


본회 '95 제4차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지난 6일 본회 닭경제능력 검정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95 제3차 회의록 요약보고에 이어 제44회 육용계 검정 최종성적 검토, 제28, 29회 산란계 검정 중간성적 검토, 종계 일반 검정 심의 등이 있었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가금티푸스 예방에 관한 세미나 개최



10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박승봉)가 지난 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채란농가에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고있는 가금티푸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미생물연구소 문성철 백신부장을 초청해 "가금티푸스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문부장은 세미나를 통해 가금티푸스는 ND와 비슷한 질병으로 구분이 쉽지 않고 약제도 특별히 없는 상태라 피해가 심각한데 10월 하순부터는 백신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피해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질병 등의 영향으로 실용계 수가 줄어들면서 난가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차후 불황기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출하중량 1.5kg 이하로 낮아져

10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악)가 지난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산지 닭값이



1,400~1,500원으로 고가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병아리 가격이 520원으로 여전히 높으며 상인들의 횡포로 출하가 지연되는 등 실질적인 소득은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적으로 하이 출하중량이 기존의 1.7kg에서 1.5kg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 때에 출하를 못할 경우 제값을 못받는 등 피해가 심각한데 일부농가에서는 상인들의 횡포로 1만수 계군을 4차례 이상 나누어 출하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소비자들은 위생적이고 깨끗한 닭고기를 찾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휴약사료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한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열풍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피해농가의 증가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계분과위원회 개최

추백리 방역실시 요령에 대한 논의

10월 종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교석)가 지난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금년 말까지 병아리가격이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



에서는 추백리 방역실시요령 고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있었다.

생산자 입장에서의 주 내용을 보면 산란중에 있는 종계의 경우 추백리 검사를 할 경우 생산성에 큰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을 것과 추백리가 판명되어 살처분 시켜야 할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법이 정부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 종계·부화인 대회가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어 오는 11월 24~25일 도고글로리 콘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 종계·부화인 대회

일시: '95년 11월 24~25일

장소: 도고 글로리 콘도
(충남 온양 소재)

대상: 전국 종계인, 부화인 및
관계자